

대구지방법원 2024. 1. 25 선고 2023가단13143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론종결 2023.12.21.

판결선고 2024.1.25.

주 문

- 1.피고는 원고에게 40,686,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2.부터 2023. 7. 26.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기초사실

가.피고는 D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가단71363호 전부금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원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타채515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았고, 인용결정문은 2020. 11. 20.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나.피고는 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타채515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기초하여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05778호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2. 6. 9. '원고는 피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5.부터 2022. 6.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하 '원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위 원심판결이 선고되자, 원고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원고를 채무자로 한 대구지방법원 2022타채2626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결정을 받았고, 2022. 7. 1.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E 계좌에서 40,686,300원을 추심하였다. 라. 한편,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22나315651)은 2023. 6. 14.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이하 '항소심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각하되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관련법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후일 상소심에서 본안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취소·변경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즉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집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후일 본안판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실효되면 이전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는 집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다25145 판결 참조). 그리고 추후 상소심에서 본안판결이 바뀌게 되면 가집행채권자는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받은 물건을 돌려줄 것과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의무는 본래부터 가집행이 없었던 것과 같은 원상으로 회복시키려는 공평의 관념에서 나온 것으로서 가집행으로 인하여 지급된 것이 금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집행채권자는 지급된 금원과 지급된 금원에 대하여 지급된 날 이후부터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다1203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2944 판결 등 참조).

나.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심판결은 항소심에서 취소됨에 따라 실효되어 그에 기하여는 집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원심판결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수령한 원리금 40,686,300원 및 이에 대하여 가지급금이 지급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2. 7.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이 송달된 2023. 7. 26.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피고의 주장

항소심판결은 'D이 원고 회사에 근무함에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위반하여 서류상 근무하지 않는 것처럼 속이면서 타인의 명의로 임금을 받아온 것'에 기초하여 판단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항소심판결에 기초한 가지급물 반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이 허위라는 사실은, D이 합자회사 F 종합상사에 근무할 때에 서류상으로는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하면서 제3자의 예금통장을 빌려서 임금 등을 받은 전력이 있고, 원고도 G와 허위의 근로계약을 작성함으로써 피고의 G에 대한 채권 행사를 방해한 전력이 있는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인정할 수 있다.

나.판단

피고의 주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항소심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면 피고가 이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항소심판결의 선고로써 가집행의 선고가 실효된 이상 피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가지급물 반환 청구를 막을 수는 없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인 D이 합자회사 F 종합상사에서 제3자의 명의로 임금을 받았다거나 또는 원고가 G에게 허위의 근로계약을 작성하여 주었다는 것은, 결국 D과 원고가 과거에 이 사건과 동종의 사안에서 허위사실에 기초한 주장을 하였다는 것에 해당할 뿐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이러한 사유의 인정 여부는 항소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영향을 줄 사유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 사 김